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0. 18 선고 2023가단1342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홍성필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난영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0. 18.

주 문

-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 위 적 청 구 취 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에게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소외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금

296,000,000원, 구상금채권 금 207,691,802원에 관하여 각 2019. 12. 11.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예 비 적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주식회사 C의 소외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금 296,000,000원, 구상금채권 금 207,691,802원에 관하여 2019. 12. 11.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에게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소외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금 296,000,000원, 구상금채권 금 207,691,802원에 관하여 각 2019. 12. 11.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E은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2. 3. 14.경 F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상호를 '주식회사 C'로 변경하였고, 같은 날 E의 아들인 G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이하 E이 인수하여 상호변경한 주식회사 C를 '소외 회사'라 한다).

나. E의 부인 H은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 E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다. 소외 회사는 2014. 7. 17. 원고에게 액면금 3억 8,000만 원, 지급기일 2014. 8. 3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E은 2014. 7. 18.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금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I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75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19. 12. 11. 피고에게 D이 2016. 6. 24. 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296,000,000원을 무단 인출한 행위로 발생한 소외 회사의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207,691,802원의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두 건의 채권양도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통지 의무의 이행을 구한다.

2) 예비적 주장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 E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다. 즉,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2006년에서 2007년경 E 개인에게 1억 9,2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E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E이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형받기 위한 정상참작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 E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인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소외 회사에 대해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E의 아들인 G 소유의 상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를 E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소멸하였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그러나 그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24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2006. 11. 3. 원고에게 "내가 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J에서 경기도 평택시 K 등에 근린생활 문화시설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의 1층 L호를 분양하여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06. 11. 15. 원고에게 "평택 상가건물을 짓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1959호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1. 27.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E은 위 형사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피해자인 원고에게 합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E에게 지급한 돈은 주식회사 M가 분양하는 경기도 평택시 K에 있는 근린생활 문화시설 건물에 대한 분양대금이거나 위 건물을 짓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준 것으로, 소외 회사와 무관한 돈인 점, ② 이 사건 공정증서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3억 8,000만 원의 어음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 소외 회사로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 상당한 손해만 입게 되는 점, ③ 소외 회사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소외 회사의 책임재산이 감소하게 되는 점, ④ 이에 대해 원고는 소외 회사가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1인 회사이므로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등 행위는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서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가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7533 판결), E의 원고에 대한 사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위 법리에 비추어 대표권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은 소외 회사에 손실을 주고 제3자인 E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거래관념상 매우 이례적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행위가 대표권 남용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소외 회사의 사해행위 여부, 피고의 악의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효선